

다. 원래부터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7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배당받은 전민준 외 3명이 이제까지 사건본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임대료 상당의 부양료를 지급하겠다는 전민준 외 3명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며, 이 사건 건물에 증여해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뒤늦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결국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시작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88671 증여해제 사건에 따라 사건본인이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회복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사건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할 것인바, 한정후견인의 추인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5. .

원고 소송대리인
(사건본인)
법무법인(유) 에이스
담당변호사 김 정 학



이 종 결



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(비송)(가) 귀중